

환경부령 제 호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4항 중 “영 제35조제3항·제5항”을 “영 제35조제3항·제5항·제6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) ① (생 략)	제29조(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징수기관은 영 제35조제3항·제5항 또는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에 따른다.	④ 징수기관은 영 제35조제3항·제5항· <u>제6항</u> 또는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에 따른다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	부 칙
	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